

중국의 자산 투자 및 폐업청산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2019 년 3 월

CTAC 한국서비스팀

김일중 회계사

1. 기업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지불하는 일회성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해당 직원은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납부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13년 근속자의 경제보상금이 70,000 위안일 경우 소득금액 및 세율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개인이 노동계약해지로 취득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은 “급여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취득한 경제보상금수입의 금액이 비교적 크고 해임된 인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이 취득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을 일회에 취득한 수개월의 급여소득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일정한 기한 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직전년도 직원 평균 급여(사회보험 관리국 공시)를 기준으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이 기준 미달 시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여부	계산방법
보상금 ≤ 현지 직전년도 직원평균 급여*3	개인소득세 면제	-
보상금 > 현지 직전년도 직원평균 급여*3	“급여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 보상금 - 현지 직전년도 직원평균 급여*3 납부할 개인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아래 종합소득 세율 적용)

따라서 상기 예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개인의 13년 근속 경제보상금이 70,000 위안이고, 현지 직전년도 직원 평균 급여를 3배를 60,000 위안으로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개인소득세 과세표준} = 70,000 - 60,000 = 10,000 \text{ 위안}$$

$$\text{납부할 개인소득세} = \text{과세표준} * \text{세율}$$

$$= 10,000 * 3\% = 300 \text{ 위안}$$

개인소득세 세율표(종합소득)

급수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	36,000 위안 미만	3
2	36,000~14,4000 위안 사이	10

급수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	14, 4000~30, 0000 위안 사이	20
4	30, 0000~42, 0000 위안 사이	25
5	42, 0000~66, 0000 위안 사이	30
6	66, 0000~96, 0000 위안 사이	35
7	96, 0000 위안 이상	45

관련법령:

- <개인소득세법 개정 이후 우대정책의 연결 문제에 대한 통지(2018)>(재세 [2018]164 호) 제 5 조 1 항

2. 외국 개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환경 및 적자누적으로 회사를 청산하고 철수하고자 하는데, 청산 후 투자자가 배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업 전체 자산의 실현가능가액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과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와 법정보상금을 차감하고 청산소득세 및 이전년도 체납세금 등 세금을 정산한 후, 기업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청산잔여자산을 계산한다.

청산잔여자산 = 기업 전체 자산의 실현가능가액 또는 거래가격 - 청산비용 - 직원급여 및 사회보험료, 법적보상금 - 청산소득세 - 이전년도 체납세금 - 채무상환

우선 청산잔여자산을 배당소득과 그 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피청산기업의 주주가 취득한 청산잔여자산금액 중, 피청산기업 누계미배당이윤과 누계이익잉여금 중 해당 주주가 점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 외국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배당소득 외의 부분:

잔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차감한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하는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 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잔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차감한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여 투자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주(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 해당됨)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개인소득세 = 투자양도소득 * 세율(20%)

관련법령:

- ▶ <기업청산업무 기업소득세처리 및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8]164 호) 제 3 조 및 제 5 조
- ▶ <개인소득세 몇가지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자[1994]20 호) 제 2 조

3. 중국에 법인설립 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설정 및 대 여금 범위

외상투자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중국의 상무부(商务局)에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에 대하여 하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등록자본금이 210 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10/7 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이 210 만 달러 이상 및 500 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이 500 만 달러 이상 및 1200 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5 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이 1200 만 달러 이상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3 배를 초과할 수 없음.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한국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 <외자기업 심사비준 관리작업에 대한 통지>(상자합[2014]314 호) 제 1 조
- ▶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에 대한 집행규정>(공상기자[1987]제 38 호) 제 3 조

4. 현물(설비 및 건물)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가?

설비와 건물로 출자 시 연루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증치세

설비: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에 따라 자가 생산, 위탁 가공 또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설비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 현물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업소득세

양도소득 인식. 거주자기업이 비화폐성자산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균등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5년 내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행위가 발행하는 해에 일회성으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출자행위가 특수성세무처리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특수성세무처리의 적용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증치세

건물에 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토지증치세를 잠정 징수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4 조
- ▶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 실시방법>(재세[2016]36 호) 제 10 조, 제 11 조
- ▶ <비화폐성자산 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4]116 호)제 1 조, 제 4 조
-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처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9 호)
-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4]109 호)
- ▶ <구조조정 시 토지증치세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5]5 호) 제 4 조

5. 청산 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할 자료들 중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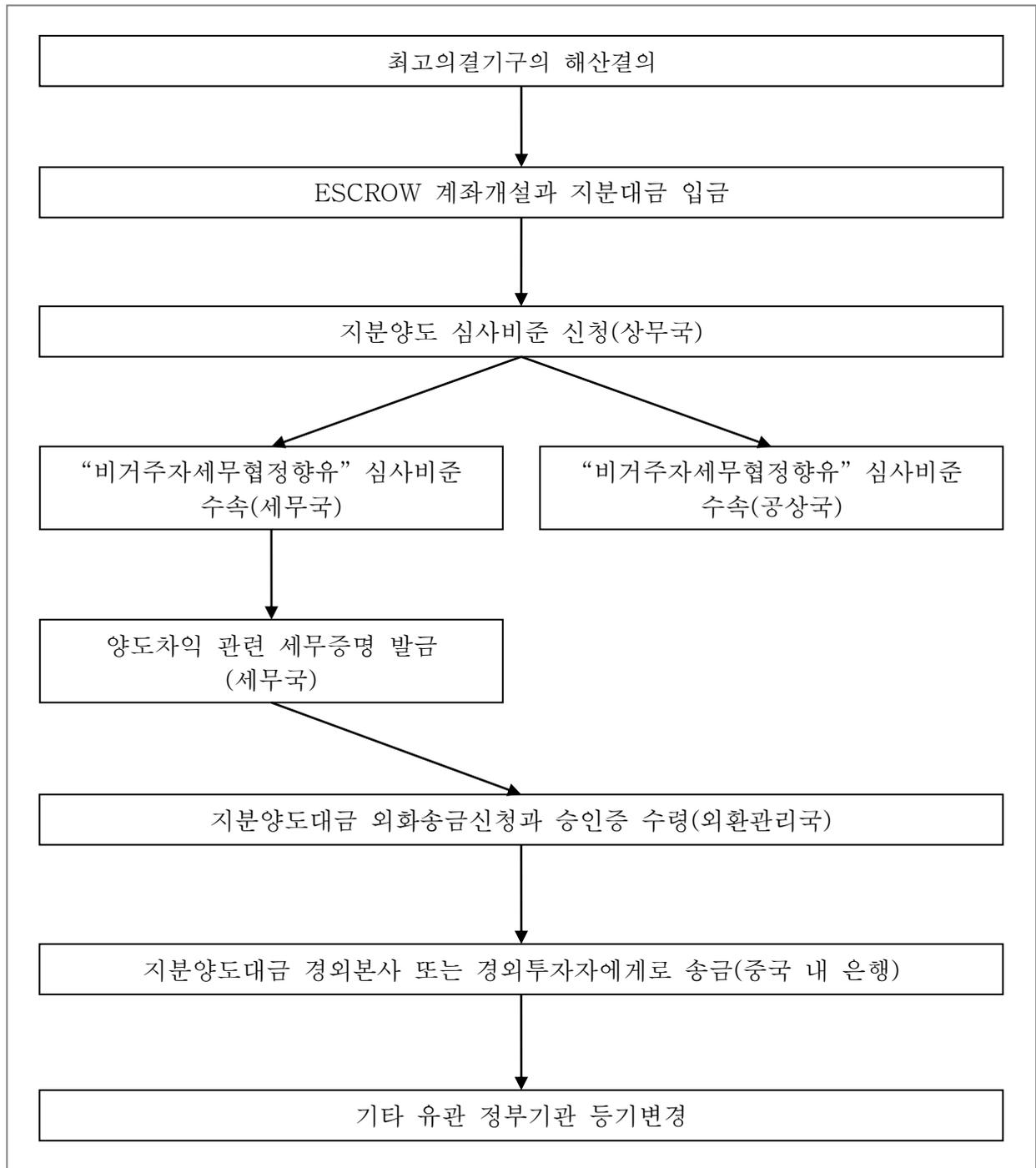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수 및 기타 사유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국에 세무등기말소를 우선 신고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등기말소 신청 심사비준 표>
2. <세무등기말소 세무 청산 신청 심사비준 표 >
3. <세무등기말소 세금계산서 청산 신청 심사비준 표>
4. <세금계산서 구매 기록부> 및 사용하지 않은 공백 세금계산서,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원본
5. 영업집조 정보 및 등본의 원본
6. 상급 주관 부문 비준문서 또는 동사회결의(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는 총기구에서 중지할 것에 동의하는 관련 결의)
7. 인민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종결한 민사판정서 원본 및 사본
8. 영업집조가 취소된 단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결정서를 제출해야 함
9. 납세신고 담당자 카드

상기 자료는 규정상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이고 구체적인 요청자료는 지역별 세무국 및 세무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6. 지분양도, 합병,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지분양도 절차



- 외국주주들간의 매매는 중국에서 외환송금절차가 없어서 업무흐름이 비교적 간단함.
- 이론적인 절차와 실무적 절차가 다를 수 있음(예: 해관변경등기 선 진행, 후 공상국 변경등기 절차를 실시하는 지역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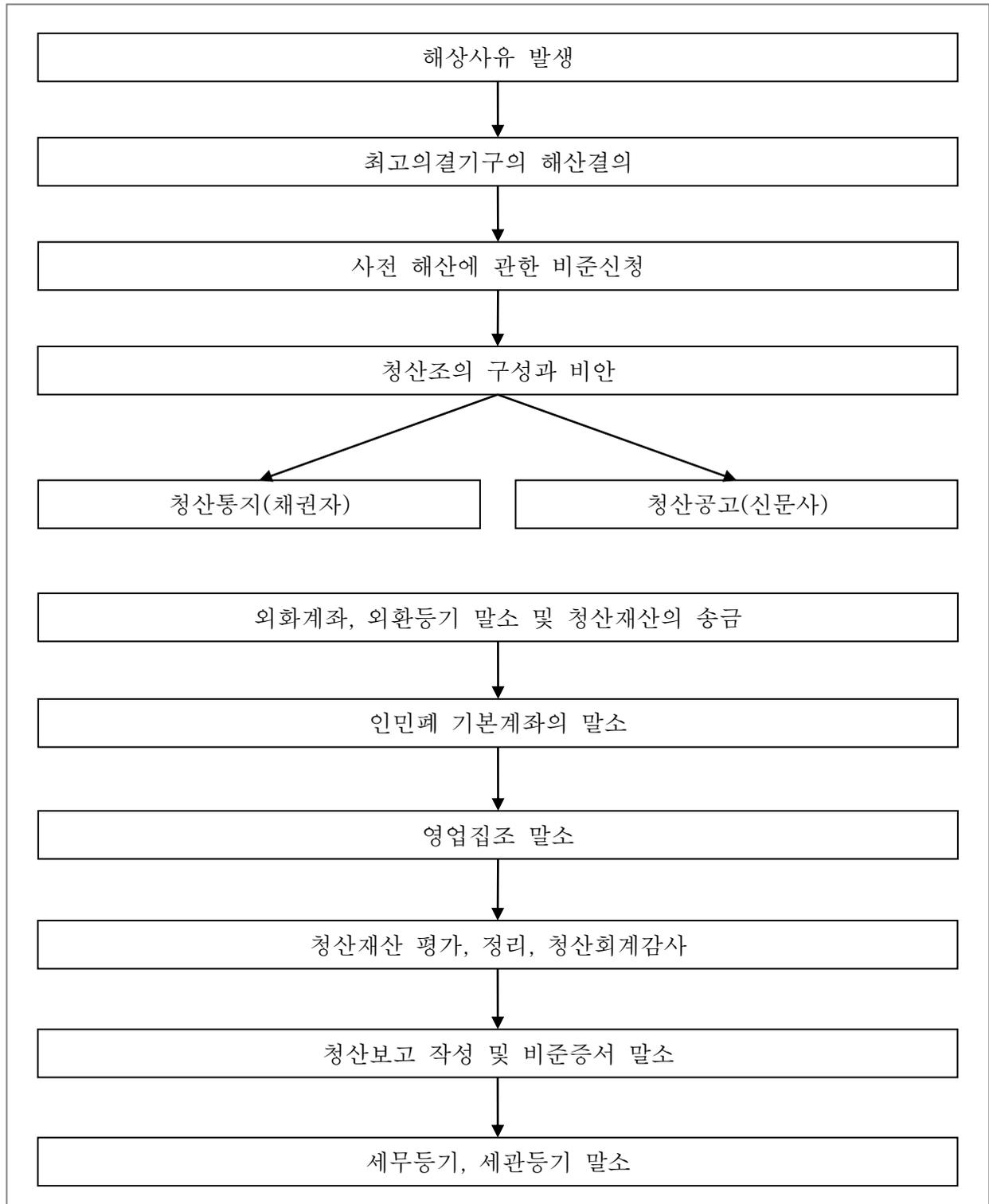
■ 합병 절차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이전하고 피합병법인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흡수합병의 업무흐름 (A 존속, B 소멸)

절차	비고
[Step 1]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신청	○ 신청기관: 소멸하는 회사의 기존 심의비준기관 ○ 신청자: 소멸하는 회사
[Step 2] 합병 심의비준 初審 진행	○ 신청기관: 합병하는 회사의 소재지 심의비준기관 ○ 신청자: 합병하는 회사
[Step 3-1] 채권자 통지 및 공고	○ 통지: 상무부문 초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 상무부문 초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성급이상 신문 1회 공고 ※ 통지 및 공고에는 채권채무승계방안을 고지. ※ 채권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문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채무승계방안 수정, 채무상환, 담보제공을 요구가능
[Step 3-2] 유관 정부기관 서명 취득	B시 재정국, 국세국, 지방세무국, 세관, 외환관리국 등 유관 부처로부터 합병에 관한 동의의견과 서명을 받아야 함
[Step 4] 합병 심의비준 最終審 진행	○ 신청기관: A시 상무위원회 ○ 신청자: 합병하는 회사
[Step 5] <비준증서> 변경 및 말소	○ 합병하는 회사는 기존 심의비준기관에 비준증서 변경신청 후 신규취득 ○ 소멸하는 회사는 기존 심의비준기관에 비준증서 말소신청 후 결과확인
[Step 6] 채권 및 채무자 변경 통지	○ 시기: 합병하는 회사의 영업집조 변경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자: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자 및 채무자 ○ 통지내용: 채권자 및 채무자 변경사항 ○ 통지방법: 서면통지, 성급이상 신문에 1회 공고
[Step 7] 각종 등기변경 및 말소작업	○ 합병하는 회사는 세무, 세관, 토지관리, 외환관리 등 유관부문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 신규취득 ○ 소멸하는 회사는 세무, 세관, 토지관리, 외환관리 등 유관부문에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결과확인

■ 청산절차



청산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7. 중국 투자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회사 규모, 경영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은 상이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방안별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지분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양도로 인하여 법률/세무상의 제반위험이 지분양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법인이 위험을 청산할 수 있음 ▪ 지분양도 에는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며, 기타 유통세(증치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음 ▪ 소요기간 짧음 ▪ 행정절차가 간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가 매도자의 민사, 세무이슈, 채무 등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위험회피를 위하여 지분양도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업원 정리해고 및 부실자산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청산 (자산양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와 매도자간 법적 책임 명확 ▪ 양수인이 없어도 회사가 임의로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6개월~2년) ▪ 행정절차가 복잡함 ▪ 잠재적인 세무이슈사항이 드러남 ▪ 종업원과의 노동분쟁 발생 가능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에 비해 각종 채권 및 종업원 고용 승계가 가능하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저항수준이 낮음 ▪ 흡수합병된 법인은 청산절차 없이 법인등기 말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가 복잡 ▪ 향후 지분양수도 기회가 발생할 경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각종 부채, 경영리스크 승계

따라서 위험감소와 절차 측면에서 볼 때 합병보다 청산이, 청산보다 지분양도가 최적화된 방안이다.



김일중(Kim Il Chung)

Managing Partner / CPA (Korea, US Delaware)

CTAC ADVISORY(SHANGHAI)CO.,LIMITED

Tel: + 86 21 6406 6403

Mobile: + 86 186 0210 9447 (China)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Website: www.ctacgroup.co.kr

ADD: Room 909, Building D, Hong Qiao Tian Jie, No. 1058 Shenbinnan Road, Shanghai
PRC(201106)